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동반협력기업용) 개정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동반성장론(일반) 통합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p> <p>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p> <p>제 1 조 거래조건 ① 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 이내에서 1회의 회전기간 및 개별여신의 여신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기재생략) ③ (기재생략)</p> <p>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CD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가.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나.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 ② 제 1 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1 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p>	<p>동반성장론(일반) 통합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p> <p>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p> <p>제 1 조 거래조건 (삭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p>	<p>손님에게불리한 항 삭제 (금감원 권유)</p> <p>체상 체상</p> <p>업무절차에 따 른 불필요 조항 삭제</p>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 1 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감액·정지
(기재생략)

제 6 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제 2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삭제)

제 3 조 감액·정지
(연행과 같음)

(삭제)

조 체상 및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문구 반영

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

조 체상

업무절차에 따른 불필요 조항 삭제

상동

상동

상동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 5 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익없기로 합니다.

⑦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인지세의 부담
(기재생략)

제 8 조 담보권 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중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 1 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중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 1 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중서 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까지	중서일 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입금누계액		

제 4 조 인지세의 부담
(현행과 같음)

(삭제)

상동

상동

상동

조 채상

업무절차에 따
른 불필요 조항
삭제

제 9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기재생략)

제 10 조 자료의 제출 등
(기재생략)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

동반성장론(협력) 추가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동반성장론(협력)」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이 약정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목적)
(기재생략)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재생략)
- ② "1 차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받는 기업 중 은행과 동반성장론(일반) 대출약정이나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제 5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현행과 같음)

제 6 조 자료의 제출 등
(현행과 같음)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

동반성장론(협력) 추가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본인은 (주)하나은행과 체결한 「동반성장론(협력)」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현행과 같음)
- ② "1 차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일반)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 또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을

조 체상

조 체상

조 체상

준용 약관 추가
등 문구 수정

용어의 수정

③~⑨ (기재생략)

⑩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이라 함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만기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⑪ (기재생략)

⑫ (기재생략)

⑬ (기재생략)

⑭ (기재생략)

제 3 조 (약정의 체결 및 운용)

(기재생략)

제 4 조 (입금계좌)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대출대금 및 만기입금 대금, 하위기업 대출금의 환출이자 수령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 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제 5 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제 7 조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

(기재생략)

제 8 조 (건별대출의 신청)

① (기재생략)

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건별대출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건별 상생매출채권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기재생략)

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 신청할 수 있는 상생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만기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며, 상환기일은 채권만기일로 합니다.

⑤ 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은행영업일일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입금받는 이용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③~⑨ (현행과 같음)

(삭제)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현행과 같음)

⑬ (현행과 같음)

제 3 조 (약정의 체결 및 운용)

(현행과 같음)

제 4 조 (입금계좌)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대출대금 및 만기입금 대금, 하위기업 대출금의 환출이자 수령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 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제 5 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제 7 조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

(현행과 같음)

제 8 조 (건별대출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건별대출금은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생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⑤ 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은행영업일일 되는 날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항 삭제

항 체상

항 체상

항 체상

항 체상

용어 수정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상동

용어 수정

<p>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⑥ (기재생략)</p> <p>제 9 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p> <p>①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기로 합니다.</p> <p>1.~4. (기재생략)</p> <p>② (기재생략)</p> <p>제 10 조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 제 13 조 (상환의무) (기재생략)</p> <p>제 14 조 (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p> <p>① (기재생략)</p> <p>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관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제 15 조 (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 (기재생략)</p> <p>제 16조 (지연이자 수취)</p>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①~② (기재생략)</p> <p>제 17 조 (정보제공의 동의) (기재생략)</p> <p>제 18 조 (면책)</p> <p>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p>	<p>에스크로계약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 9 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p> <p>①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상생외상매출채권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전산입력)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합니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10 조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 제 13 조 (상환의무)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 (기한연장)</p> <p>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 15 조 (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 (현행과 같음)</p> <p>제 16조 (관련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p>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제 17 조 (정보제공의 동의) (현행과 같음)</p> <p>제 18 조 (면책)</p> <p>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p>	<p>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p> <p>손님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및 삭제 (금감원 권유)</p> <p>모호한 문구의 제목 및 용어 수정 (금감원 권유)</p> <p>손님에게 불리한 문구 수정(금감원 권유)</p>
---	--	--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양도할 대상채권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 ① **개별 승낙방식인 경우**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받은 은행은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판매기업은 제 1 항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기재생략)
- ② **포괄 승낙방식인 경우**
 1.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
 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기본계약	물품 또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 ① **확정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1.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 받은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제 1 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현행과 같음)
- ② **장래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1. **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장래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장래채권 양도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확정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 1 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확정채권 양도통지용) 원본을**

용어 수정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 구 수정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 구 수정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 구 수정

3.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포괄 송낙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

- ①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판매기업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 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2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사항)
(기재생략)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본 인	(인)
--	-----	-----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3.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

제 4 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

- ①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 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2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본 인	(인)
--	-----	-----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조 수정

